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5
----------	-----

발의연월일 : 2026.03.13.

발 의 자 : 유지웅 · 박미정 · 이은경
김지훈 · 안병두 · 신정태
하서영 의원(7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이를 ‘해당액’이 아닌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음. 이에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안 제2조)

나. 환수액 및 징수액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라.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그 부정 수령한 여비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8호 중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대구광역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 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u>여비</u>)</p> <p>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u></p> <p>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u>가산징수</u>)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p>	<p>제2조(상시출장 <u>공무원의 여비</u>)</p> <p>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 -----</u> ----- -----.</p> <p>② <u>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u>가산징수</u>) ① ----- ----- <u>그 부정수령한 여비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금액의 5</u></p>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
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
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
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
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
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 7. (생략)

8.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

배에 해당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

-----.

1. ~ 7. (현행과 같음)

8. -----

임기제공무원”으로, -----

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4. 12. 31.)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6. 1. 2.)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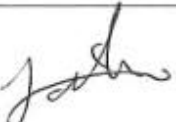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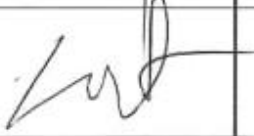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6. 1. 2.)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유지웅			
곽희경			
이은경	이은경.		
김지훈			
한병수			
신경래			
하서영	